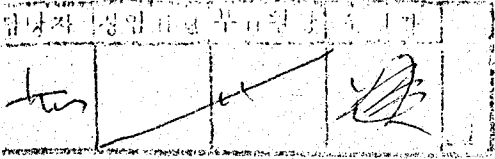


제 739 호

1979.11. 5



발행인 : 서울특별시장 정상천

편집 : 문화공보관 심계섭

전화 75-7834

인쇄 : 서울특별시종합발전실

전화 75-6090

시보

차례

◎ 조 례

- 제 1368 호 : 서울특별시 교육소청심사위원회 회위원 비용변상조례 3
- 제 1369 호 : 서울특별시 소방서 설치조례중개정조례 3
- 제 1370 호 : 서울특별시립병원설치조례중개정조례 5
- 제 1371 호 : 서울특별시남서울대공원전철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 7
- 제 1372 호 : 서울특별시 자동차등록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 8
- 제 1373 호 : 서울특별시 공원관리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 8

◎ 규 칙

- 제 1829 호 : 서울특별시 건물대지조성사업지구지적정리위원회 회규칙중 개정규칙 9
- 제 1830 호 : 서울특별시 소방서사무분장규칙중개정규칙 10

<이 면 계속>

1. 시 공무원은 반드시 읽어야 한다.
2. 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서울특별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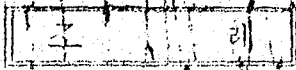
- 제 1831 호 : 서울특별시남서울대공원건설 사업소사무분장 규칙중개정규칙 12
- 제 1832 호 : 서울특별시자동차등록사업소사무분장 규칙중개정규칙..... 13

◎ 고 시

- 제 460 호 : 도시계획시설 (학교) 변경결정및지적승인..... 13
- 제 461 호 : 도시 계획시설 (학교) 결정및 지적승인..... 14
- 제 462 호 : 도시 계획시설 (시장) 결정..... 14

◎ 공 고

- 제 365 호 : 금분도특정가구정미지구건축계획공고..... 15
- 제 368 호 : 도시 계획 사업 (전기공급설비 - 송전선로) 완료공고..... 15
- 제 370 호 : 공인신조사용승인공고..... 15
- 제 371 호 : 공인신조사용승인공고..... 16
- 제 372 호 : 도시계획 사업 (시장 : 백화점) 시행공람공고..... 16



서울특별시 교육소청심사위원회 위
원비용 변상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

교육감 이 창 갑 인

1979년 11월 5일

◎ 서울특별시조례 제 1368 호

서울특별시교육소청심사위원회

위원비용변상조례

제 1 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
시 교육소청심사위원회 (이하 "위원
회"라 한다)의 위원에게 지급하
는 일비, 여비 기타 직무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일비) 서울특별시 교육위원
회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
원회의 회외에 출석한 경우에는
일비 10,000 원을 지급한다.

제 3 조 (여비) 서울특별시 교육위원
회의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
원회의 의결에 의하여 공무로 여
행할때에는 국내여비규정 별표 여
비지급 구분표의 제 2 호 갑류에 상

당하는 여비를 지급한다.

제 4 조 (실기변상) 위원이 직무수행
을 위하여 필요한 일비 및 여비
이외의 경비는 그 실비의 변상을
받는다.

제 5 조 (비용지급의 특례) 본 조례
에 의하여 위원에게 지급하는 모
든 비용은 예산의 범위안에서만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1979.1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은 서울특별
시소방시설치조례중 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정 상 천

1979년 11월 5일

◎ 서울특별시조례 제 1369 호

서울특별시소방시설치조례중개정조례

서울특별시 소방시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및 (별표 2)를 별지와 같
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지방공무원 정원표

계	급	개	정
지방소방정		7	
지방소방령		15	
지방소방정		40	
지방소방위		47	
지방소방장		106	
지방소방교		250	
지방소방차		929	
교용원		10	
(타각원 4, 백장정리원 6)			
계		1,404	

(별표 2)

소방서의성칭및관할구역

성	칭	관	할	구	역
중	부소방서	중	구	중	구일원
동	부소방서	동	대	문	구, 성동구일원
영	진소방서	영	산	구	, 마포구일원
영	동부소방서	영	동	포	, 구로구, 강서구일원
성	북부소방서	성	북	구	, 도봉구일원
서	부소방서	서	대	문	구, 은평구일원
강	남부소방서	강	남	구	, 강동구일원
관	악부소방서	관	악	구	, 동작구 및 강남구중
		관	악	동	, 양재동 및 서초동일원

각부총리의 승인을 얻은 서울특별시
 지방방위설치조례중 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정 상 권

1979년 11월 5일

◎ 서울특별시 조례 제 1370 호

같이 개정한다.

서울특별시립병원 설치조례
중개정조례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서울특별시립병원 설치조례중 다음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지방공무원정원표

가. 각병원의 직급별 정원

구분		합 계	강 남	영등포	동 부	아 동	서대문	정 진	
									직 급
1 급	2 갑 의 무	1	1						
	2 을 의 무	6	1	1	1	1	1	1	
	3 갑 행 정	1	1						
	3 을	행 정	7	2	1	1	1	1	1
		약 무	6	1	1	1	1	1	1
		간 호	4	1	1	1	1	1	1
		소 계	19	4	5	5	3	3	3
	4 급	행 정	15	5	2	2	2	2	2
		약 무	13	3	3	2	2	2	1
		보 건	간 호	12	4	2	2	2	2
간 호			23	7	5	5	2	3	1
		소 계	63	19	12	11	8	9	4
5 급	행 정	17	5	3	2	3	3	2	
	4 을	약 무	15	3	2	2	2	3	1
		보 건	11	4	2	1	2	3	2
		간 호	42	15	6	6	5	3	2
		소 계	86	27	12	11	12	17	7
5 급	행 정	33	7	5	4	2	3	2	
	보 건	13	4	2	2	2	2	1	
	간 호	72	15	7	8	16	22	4	
		소 계	108	26	14	14	20	27	7

구분		합 계	강 남	영동포	동 부	아 동	서대문	정 신
직 종	행정	17	5	4	4	4		
	보진	10	4	3	4	2	4	1
	간호	161	46	9	9	54	32	11
	소계	196	55	16	17	60	36	12
	합 계	480	134	58	57	104	93	34
고	승원	259	48	22	23	73	65	28
총	계	739	182	80	80	177	158	62

나. 각 병원 고향원거 직종별 정원

병원		합 계	강 남	영동포	동 부	아 동	서대문	정 신
운	전	18	6	2	3	3	3	1
전	공	7	2	1	1	1	1	1
기	계	7	2	1	1	1	2	
남	방	16	4	2	2	2	4	2
수	의	38	7	3	3	3	10	12
목	공	6	?	1	1	1	1	1
타	자	7	2	1	1	1	1	1
적	봉	7	1	1	1	2	1	1
소	독	14	2	1	1	1	8	1
교	환	16	4	3	3	2	2	2
세	탁	14	4	1	2	3	4	
취	사	25	5	2	2	3	9	4
급	부	27	3	1		4	18	1
진	달	6	1	1	1	1	1	1
불	리	10	4			4		
리	치							
치	료	4				4		
료	모					4		
모	모					4		
합	계	259	48	22	23	73	65	28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은 서울특별시 남서울대공원 건설사업소설치조례 중 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조례제 1371 호

서울특별시남서울대공원건설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

서울특별시장 정 상 천

서울특별시남서울대공원 건설사업소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1979년 11월 5일

이 조례는 공포한날로부터 시행한다.

(별표) 지방공무원 정원표

직급별	정원	정 원 내 용
2급을류	1	행정 또는 시설직 1
3급갑류	2	행정직 1, 토목 및 건축직 1
3급을류	6	행정직 1, 전기직 1, 농림직 1, 수의직 1, 토목 및 건축직 2
4급갑류	8	행정직 1, 기계 및 전기직 1, 농림직 1, 수의 및 축산직 2, 토목 및 건축직 3
4급을류	12	행정직 4, 기계 및 전기직 1, 농림직 1, 수의 및 축산직 1, 토목 및 건축직 5
5급갑류	7	행정직 3, 수의 및 축산직 1, 토목 및 건축직 2, 지적직 1
5급을류	5	행정직 2, 기계 및 전기직 1, 토목 및 건축직 2
고용원	18	전공 1, 사육원 1, 수위 2, 제도사 2, 타자원 2, 경비원 2, 대장정리원 3, 청부 2, 전달부 1, 원정 2
계	59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은 서울특별시 자동차 등록사업소 설치 조례중 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정 상 천

1979년 11월 5일

◎서울특별시조례제 1372 호

서울특별시자동차등록사업소
설치조례중개정조례

서울특별시 자동차 등록사업소
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3 조제 3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
다.

3 . 자동차등록에 따른 지방세의 과징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날로부터 시행 한다.

(별표)

지 방 공 무 원 정 원 표

직 급 별	정원	정 원 내 용
3 급 을 유	1	행정직 1
4 급 갑 유	4	행정직 3 , 기계직 1
4 급 을 유	9	행정직 8 , 기계직 1
5 급 갑 유	17	행정직 17 , 기계직 2
5 급 을 유	18	행정직 17 , 기계직 1
기 능 직 고 용 원	26	전공 1 , 기계공 1 , 수위 2 , 타자원 1 , 대장정리원 8 , 청부 1 , 친달부 1 , 민원보조원 11
계	77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은 서울특별
시 공원 관리사무소 설치 조례중
개정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정 상 천

1979 년 11 월 5 일

◎서울특별시조례제 1373 호

서울특별시공원관리사무소
설치조례중개정조례

서울특별시 공원 관리사무소 설치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를 공포한날로부터 시행 한다.

(별표)		지방공무원정원표
직급별	정원	정원내용
3급갑류	1	행정직 1
3급을류	2	농림직 2
4급갑류	6	행정직 3, 농림직 2, 수의직 1
4급을류	8	행정직 2, 전기직 1, 농림직 3, 수의직 1, 토목직 1
5급갑류	6	행정직 2, 농림직 3, 토목직 1
5급을류	9	행정직 3, 전기직 1, 농림직 4, 간호직 1
고용원	77	원전원 6, 전공 1, 난방공 3, 기계공 1, 사육원 3, 수의 4, 타자원 2, 월예수 8, 보조 1, 전화교환원 1, 경비원 15, 대장정리원 4, 감시원 2, 청부 1, 매표원 11, 안내원 6, 월정 8
계	109	

규 칙

서울특별시 길음택지 조성 사업지구 지적정리 위원회 규칙중 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정 상 천 인
1979년 11월 5일

◎서울특별시규칙제 1829 호

서울특별시길음택지조성사업지구
지적정리위원회규칙중개정규칙

서울특별시 길음택지 조성 사업지구 지적정리 위원회 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1 조 내지 제 5 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 1 조 (목적) 이 규칙은 길음택지 조성 사업지구의 지적정리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직무) 지적정리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 ①지구경계 확정 및 착오시정에 관한 사항
- ②지구내 지적 착오시정 및 정리에 관한 사항
- ③지적착오로 인하여 야기된 제반 문제처리에 관한 사항
- ④축적 변경실시준비에 관한 사항

제 3 조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재무국장이 되며 위원은 예산담당관, 관재과장, 지적과장, 도시계획 1과장, 주택개발과장, 지적과 지적 2계장 및 성북구청의 총무국장과 재무국장이 된다.

제 4 조 (위원장) ①위원장은 회무를 통리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이를 사회한다.

②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 5 조 (회의 및 의사) ①회의는 필요에 따라 수시 소집한다.

②회의의 의사는 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제 7 조 제 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 7 조 (간사와 서기)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관재과, 지적과 직원 중에서 간사 1인과 필요한 인원의 서기를 둔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날로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소방서 사무분장 규칙 중 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정 상 천

1979년 11월 5일

◎서울특별시규칙제 1830 호

서울특별시소방서사무분장규칙중개정규칙

서울특별시 소방서 사무분장 규칙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중 중부소방서 신당소방관 파출소란 밑에 "청와대소방관 출장소"를, 강남소방서 다음에 "남부소방서"를 별지와 같이 각각 신설하고, 영등포소방서관중 "노량진소방관파출소, 사당소방관파출소, 신림소방관파출소, 봉천소방관파출소란"을 삭제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경과규정) 이규칙시행으로 변경되는 구 및 동의 명칭은 구 및 동의 명칭이 변경되는 날로부터 적용한다.

(별표) 소방관파출소의 명칭, 위치와 관할구역			
서 별	명 칭	위 치	관 할 구 역
중부소방서	청와대소방관출장소	종로구 세종로 1번지	종로구중 세종로 1번지
남 부 소 방 서	반포소방관파출소	강남구 반포동 영동 제 1 구획토지구획정리 사업지구채비지 190-2	강남구중반포동, 서초동 동작동중동작동, 흑석동
	노량진소방관 파출소	동작구 노량진동 153-8	동작구중 노량진동, 본동, 대방동 상도동, 상도 1 동
	사당소방관파출소	동작구 사당동 733-1	동작동 사당동, 강남구중방배동, 관악구 남현동
	신림소방관파출소	관악구신림동 230 부력의 1	관악구중 신림동 동작구중 신대방동
	봉천소방관파출소	관악구 봉천동 38-1	관악구중 봉천동

서울특별시 남서울 대공원 건설사업소 사무분장 규칙중 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정상천 ㉠

1979년 11월 5일

○ 서울특별시 규칙 제 1831 호

서울특별시 남서울 대공원 건설사업소 사무분장 규칙중 개정규칙

서울특별시 남서울 대공원 건설사업소 사무분장 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3 조 (공사과) ① 공사과에 공사 1 계, 공사 2 계, 공사 3 계 및 공사 4 계를 두고, 공사 1 계장은 지방농림 기좌로 공사 2 계장은 지방토목기좌로 공사 3 계장은 지방건축 기좌로 공사 4 계장은 지방전기기좌 또는 지방기계기좌로 보한다.

② 공사과의 개별분장 사무는 다음과 같고와 같다.

1. 공사 1 계

가. 조정공사 및 수목식재에 관한 종합계획

나. 조정 및 식재공사의 설계, 시공 및 감독

다. 기타 관내 다른계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2. 공사 2 계

가. 토목공사 종합계획

나. 토목공사의 설계, 시공 및 감독

3. 공사 3 계

가. 건축공사의 종합계획

나. 건축공사의 설계, 시공 및 감독

4. 공사 4 계

가. 전기, 기계, 수도, 냉난방, 위생 및 기타 부대시설의 설치계획

나. 전기, 기계, 수도, 냉난방, 위생 및 기타 부대시설의 설계 시공 및 감독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자동차 등록사업소 사무분장 규칙중 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정상천

1979년 11월 5일

◎ 서울특별시규칙제 1832 호

서울특별시자동차등록사업소
사무분장규칙중개정규칙

서울특별시 자동차등록 사업소 사
무분장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2 조 제 1 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제 2 항 제 4 호를 다음과 같이 신
설한다.

① 사업소에 등록 1 계, 등록 2 계, 검
사계 및 과징계를 두고 등록 1
계장 등록 2 계장 및 과징계장은
지방행정 주사로 검사계장은 지
방 기계기사로 보한다.

4. 과징계

- 가. 자동차 등록에 따른 각종
지방세의 부과, 징수
- 나. 기타 공과금의 징수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
한다.

고 시

◎ 서울특별시고시제 460 호

도시계획시설 (학교) 변경결정및지적승인

1.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시설 (학교)
을 다음과 같이 변경 결정 및
지적승인 하였고 도시계획법 제
12 조 및 등법제 13 조와 건설부
고시 제 41 호 ('77.3.16) 권한
위임 사항에 의거 이를 고시한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국 도시계획 1 과와 관할구청 시민
봉사실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체 관계인에게 보인다.

1979. 11. 2

서울특별시 장

○ 도시계획시설 (학교) 변경조서

구분	시설명	위 치	면 적 (㎡)	비 고
기 정	한국성서학교	도봉구 상계동 204	7,626 ㎡ (2,306 평)	
변 경	"	" " 201	9,348 ㎡ (2,827 평)	

* 별첨 도면 생략

◎ 서울특별시고시제 461 호

도시계획 시설 (학교) 결정 및 지적승인

1.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시설 (학교) 을 다음과 같이 시설 결정 및 지적승인 하였고 도시계획법 제12 조 및 같은법 제 13 조와 건설부 고시 제 41 호 ('77.3.16) 에 의거

이를 고시한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도시계획 1 과와 경기도 시흥군청 및 광명출장소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에게 보인다.

1979. 11. 5

서울특별시장

○ 도시계획시설 (학교) 결정및지적승인조서

구분	시설명	위치	면적 (㎡)	비고
신설	광명고등학교	경기도시흥군서면철산리 산 39-1 일대	32,232 (9,750 평)	

* 별첨 도면 생략

◎ 서울특별시고시제 462 호

도시계획시설 (시장) 결정

1.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시설 (시장) 을 다음과 같이 결정 하였고 도시계획법 제 12 조와 건설부 고시 제 41 호 ('77.3.16) 관한 위임사항에 의거 이를 고시한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1 과와 관할구청 도시정비과 및 시민봉사실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에게 보인다.

1979. 11. 7

서울특별시장

○ 도시계획시설 (시장) 조서

구분	시설명	위치	면적	비고
신설	영천소매시장	서대문구영천동 69-120 일대	980 평	지하 1 층, 지상 5 층 연면적 : 7,464.48㎡

* 별첨 도면 참조

공 고

◎ 서울특별시 공고제 365 호

금문도특정가구정비지구
건축계획공고

1. 건설부 고시 제 381 호 (74.11.27) 로 지구지정된 금문도 특정가구 정비지구의 건축계획에 대하여 건축법 제 33 조의 2 의 규정에 따라 건설부장관이 승인 (79.10.26) 하였기 건축법 제 33 조의 2 제 3 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한다.

가. 공고내용 : 금문도특정가구 정비지구 건축계획

2. 관계도서는 당시 건축국 재개발 1 과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

1979.11.2

서울특별시 장

◎ 서울특별시 공고제 368 호

도시계획사업 (전기공급설비·송전선로) 완료공고

1. 서울특별시 고시 제 34 호 (79.1.29) 로 도시계획사업 (전기공급설비) 시행허가된 도봉구 쌍문동 산 325-1 의 13 필지에 대한 154 KV 성북

분기 T/L 건설공사가 완료되었기 도시계획법 제 57 조 2 항 및 제 85 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한다.

2. 관계도서는 도봉구청 도시정비과와 시민봉사실에 각각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

1979.11

서울특별시 장

- 다 음 -

1. 사업시행지 - 서울특별시 도봉구 쌍문동 산 325-1 의 13 필지
2. 사업종류및명칭 - 도시계획사업 (전기공급설비 - 송전선로)
3. 면적및규모 - 연장 4,000 m
철타 13기
4. 사업시행자주소, 성명 - 중구남산동 3가 11-5 한국전력 (주)
서울전력관리 본부장 김차경
5. 사업의착수 및 준공년월일
가. 착공년월일 - 1979.5.4
나. 준공년월일 - 1979.11.1
6. 공사완료도면 - 생략

◎ 서울특별시 공고제 370 호

공인신조사용승인공고

서울특별시 공인을 아래와 같이

신조사용 승인하였기 서울특별시 공
인조례 제 9 조에 의거 공고한다.
1979.11.
서울특별시장

1) 공인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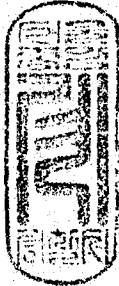
가) 중앙경찰서장인

나) 중앙경찰서계인

2) 사용개시일 : 1979.12.1

3) 공인의인영 : 다음

인



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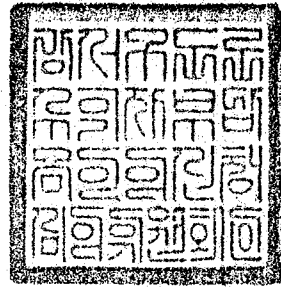
공인명

중앙경찰서장인

중앙경찰서계인

1. 공인명 : 강서구 도로수익자부담금
이의 신청 심의위원회인
2. 사용개시일 : 1979.11.10
3. 공인의인영 : 다음

인



영

공인명

강서구도로수익자부담금이의
신청 심 의 위 원 회 인

◎ 서울특별시 공고제 372 호

도시계획사업 (시장 : 백화점)
시행공람공고

1. 서울특별시 고시 제 426 호 (79.10.2) 로 결정되고 동고시 제 450 호 (79.10.23) 로 처치승인된 강남구청담동산 67-61 일대 백화점 개설구간내에 저축편입되는 토지에 대하여 도시계획사업 (시장 : 백화점) 을 시행코져 건설부 고시 제 41 호 (77.3.16) 권한 위임중 내부위임 및 도시계획법 제 25 조의 2 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람 공고

◎ 서울특별시 공고제 371 호

공인신조사용승인공고

서울특별시 공인을 아래와 같이
신조사용 승인하였기 서울특별시 공
인조례 제 9 조에 의거 공고한다.
1979.11.
서울특별시장

한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1과와 강남구청 도시정비과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

3. 본 공고내용은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별도로 송달될 것이나 미수령자에 대하여는 이 공고로 갈음한다.

1979.11.7

서울특별시장

(공 랑 개 요)

가) 사업시행지 : 강남구청담동산 67-61 일대

나) 사업의종류및명칭 : 도시계획사업 (시장 : 백화점) 시행

다) 사업의규모 (면적) : 937.10 평

라) 사업시행자주소, 성명 : 서울특별시 강남구청담동산 67-2
진영건설주식회사 대표 김익진

마) 사업의착수 및 준공예정일

1) 착수예정일 : 1979.11. . . .

2) 준공예정일 : 1981. 3. . . .

바) 공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사)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의 소재지, 지목, 지적,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 (별첨)

아) 토지소유자와 토지수용법 제 4 조 제 3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인의 주소, 성명 (별첨)

자) 기타사항

기타 상세한 사항은 강남구청 도시정비과 (전화 56-8972) 로 문의바람.

토 지 세 목 조 서

위 치	지 번	지 목	지 적	소 유 자		이 해 관 계 인	
				주 소	성 명	주 소	성 명
강남구청담동	산 67-61	임	209.5 평	강남구학동산 8-7	김택		
"	산 67-135	"	352.6	"	"		
"	산 67-136	"	375.0	"	"		